

	총동문회 규정	문서번호	7-1-1		
		제정일	1999. 11. 03.		
		개정일	2009. 03. 01.		
		페이지	1/4	관리 부서	총동문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 발전에 관한사업
3. 재학생 활동지원 및 장학사업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서울여자간호대학을 졸업한 자
 2. 준 회 원 : 모교에 적을 두고 있는 동문
 3. 명예회원 : 모교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의 모교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 3 장 총 회

제6조(총회)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총동문회 규정		문서번호	7-1-1	
			제정일	1999. 11. 03.	
			개정일	2009. 03. 01.	
			페이지	2/4	관리 부서 총동문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
3. 기타 중요사항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8조(지위) 본 회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

회를 둔다.

제9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회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수석 부회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본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본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1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 할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12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동문회 규정	문서번호	7-1-1		
		제정일	1999. 11. 03.		
		개정일	2009. 03. 01.		
		페이지	3/4	관리 부서	총동문회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3. 감 사 : 3인
4. 총무, 서기 회계를 필요에 따라 둔다.
5. 연락간사 : 각 회 총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총 학생회장 부재 시 부회장 또는 기타 적임자로 한다.)

제13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서기, 회계는 본회 사무를 수행한다.
4. 연락간사는 각 기수마다 연락을 긴밀히 한다.

제15조(임원선출)

1.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 시 후보자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고문) 회원 수, 졸업 년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수익) 본 회의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신입생 평생회비)
2. 찬조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총동문회 규정	문서번호	7-1-1		
		제정일	1999. 11. 03.		
		개정일	2009. 03. 01.		
		페이지	4/4	관리 부서	총동문회

제18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예산에 의해 지출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제 7 장 회 칙 개 정

제20조(제안) 본 회 회칙 개정안을 이사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 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2찬성으로 개정 의결한다.

부 칙

1.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